

과천도시공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청사 건물 내외에 설치된 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규정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 주차장 : 공사 문화시설 입구, 체육시설 입구 및 진입통로 지상
2. 지상1층 주차장 : 공사 문화시설에 위치한 지상 1층
3. 지하1층 주차장 : 공사 문화시설에 위치한 지하 1층
4. 지하2층 주차장 : 공사 문화시설에 위치한 지하 2층

제3조(관리조직 및 임무) ① 관리조직은 직제규정을 따른다.

② 주차장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확인
2. 주차요원의 교육, 훈련 및 감독
3. 주차장내 제반시설물의 상태 점검
4. 이용자의 제반 준수사항 고지
5. 수납 주차요금의 납입

③ 주차관리 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징수요원 : 주차요금을 수납하며 일일 결산하여 정산납부
2. 주차유도요원 : 주차장내에 차량의 질서유지, 통제안내 및 경비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09:00 ~ 23:00
2. 토·일·공휴일 : 10:00 ~ 18:00

제5조(주차위치) ① 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주차장에 표시된 구획선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구분) 주차는 시간주차와 정기주차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간주차 : 월정기주차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차량
2. 정기주차 : 월정기주차 신청을 하여 공사 주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단, 월정기주차 가능면수는 사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3. 월정주차는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잔여일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다.

제7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아래 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구 분		승 용 차	비 고
1.시간주차	가. 주차요금	○10분에 400원	○30분미만은 무료 주차 ○30분 초과 시는 입차 시간부터 계산하여징수
	나. 공연관람	○4시간까지 2,000원	※4시간 초과 시 초과요금 적용
2.주 차 권		○3시간주차권 7,200원 ○전일주차권 30,000원	※대관자 및 임대업자 50% 감면
3.월정기 주차요금		○120,000원	

② 밤샘주차금지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추징금은 주차당일 계산요금에 전일 주차요금 한도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주차요금의 면제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차량, 공사 임직원차량, 방송 및 언론사 취재차량(기자증 확인)
2. 공사 및 시청주관 행사 참석차량
3. 국가유공자이자 보철차량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군경 1~3급 자가운전차량(동반차량 포함)
4. 체육시설의 정기회원과 일일입장객 3시간이내, 헬스 및 2시간 프로그램이용 회원은 4시간 이내 무료주차를 적용하고, 1일 2종목이상 이용하는 정기회원은 각 사용시간에 전후 1시간을 추가하여 무료주차로 한다. 이 경우 정기회원은 회원증으로, 일일 입장객은 입장권으로 확인한다.
5. 임대사업장 이용고객 중 음식점 이용고객은 2시간 그 외 매장은 1시간 무료주차를 적용하고, 이 경우 임대사업장 이용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6. 문화시설 대관고객의 경우 1일 대관 시 전일 무료주차권을 대극장 15매, 소극장 10매, 갤러리 2매를 제공한다.

② 주차요금 50%할인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 소속 공무원(직원포함), 공사 입주업체 및 단체 상근자
2. 1,000cc미만의 경승용차
3. 문화·체육시설 대관자 및 공사 상주단체의 프로그램 이용자는 해당부서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만 18세 미만 다자녀 3명이상 가구
5. 장기 등 기증자 본인
6.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상이군경 4급(동반차량 포함)
7. 대관자 및 임대사업자가 주차권(3시간, 전일)을 구입하는 경우
- ③ 장기 등 기증자 본인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본인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
- ④ 기타 과천도시공사사장(이하 “사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차량은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요금징수방법) ① 시간 주차료는 후납으로 징수하며, 정기 주차료는 선납으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징수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월정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장 이용자가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 일에 대해 일할 계산 하여 환부한다.

제10조(요금관리) ① 요금징수요원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일일결산서 1부를 작성하여 당직실 금고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수납된 주차요금은 익일 오전 중에 수입금납부결의서를 작성하여 수납 처리토록 한다.

제1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정,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 폐차 및 기타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장관리) ① 사장은 과천시주차장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안내표지판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승용차(10인 이하)만 주차토록 한다. 다만, 공사운영차량 및 관람자수송버스, 공연·공사 및 업무관련 화물차량 등은 예

외로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 기물 또는 타인의 차량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이용자 준수사항) 관리책임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서는 서행운전을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표시신호 및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에 주차한다.
3. 주차장내의 인화물질 등의 반입을 금지하며, 흡연 및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동차 내에 도난 우려가 있는 귀중품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분실의 경우 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5. 주차장내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즉시 관리요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한 경우의 밤샘 주차는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밤샘주차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주차행위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에 따른 주차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등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제9조에 따른 월정 주차요금 미납 차량

제16조(감독) 사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주차장조례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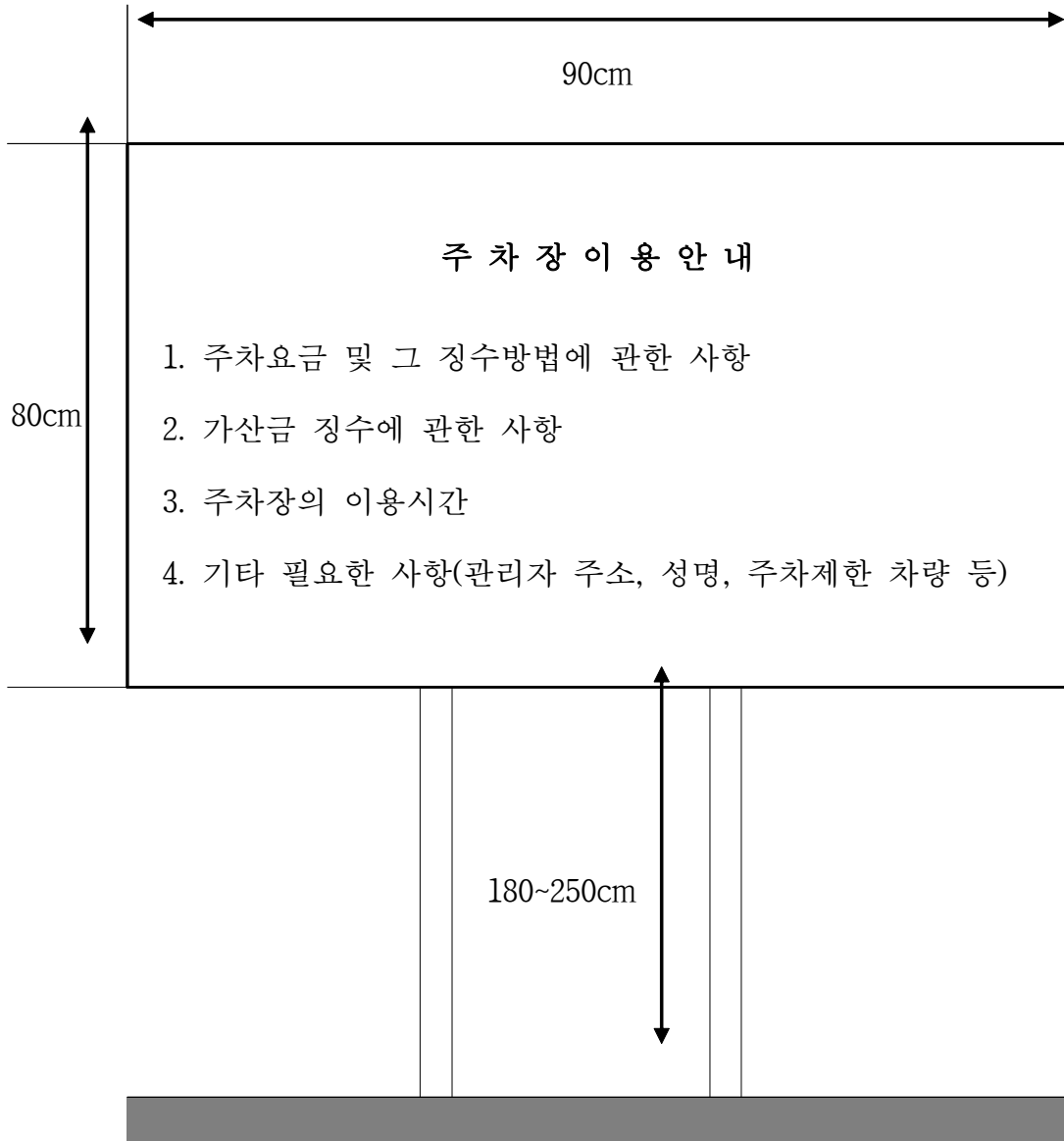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12조제1항 관련)



- 재 질 : 스테인리스
- 바 탕 : 녹색
- 글 씨 : 흰 색 (고딕)